

1. 법적 근거

본 정책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Health & Safety Code) 제116900조 이하(수도 공급 중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 및 이를 개정한 SB 3(2023년 법률 제855장)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2. 정책의 적용

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이하 “본 정책”)은 수도국(District)의 모든 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정에 적용되며, 비주거용 서비스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수도 서비스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이동식 주택(이동식 주택 단지 내 이동식 주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농장 근로자 주택 등 주거용 연결지에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 정책이 수도국의 다른 규칙, 규정 또는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정의

A. **영업일**

수도국 사무실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도국 휴일 및 격주로 사무실이 휴무하는 금요일은 제외됩니다.

B. **명의 고객(Customer of Record)**

해당인이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정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C. **연체**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일반적으로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25일)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청구서를 의미합니다.

D. **거주자**

명의 고객이 아니면서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임대인 명의 계정의 임차인을 포함합니다.

E. 주치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88(b)(1)(A)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4. 연락처 정보

수도 요금에 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상담하려면 수도국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949) 837-06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또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격주 금요일 휴무) 수도국 고객센터 창구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며, 수도국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도국 고객센터 사무소는 Lake Forest 소재 24251 Los Alisos Blvd.에 위치해 있습니다.

5. 청구서 발급 및 청구 절차

수도 및 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매월 1회 전액 납부하거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수시로 정하는 다른 주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일반적으로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청구서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청구서가 최소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수도국은 해당 서비스 주소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에 대한 서면 통지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 중단 최소 10 영업일 전에 명의 고객에게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의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연체 금액;
3.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
4. 연체 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5. 고객 또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성인이 서비스 또는 요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또는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6. 고객이 연체 서비스 요금의 분할상환을 포함하여 유예, 감액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7. 고객이 수도국의 저소득층 요금 지원 프로그램(Life Line Rate Assistance Program, 수도국 행정규정 제7030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8. 고객이 납부 약정을 요청하거나 수도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B. 거주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서면 통지

1.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국이 수도 서비스 중단 최소 10 영업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도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 a) 수도국이 단독주택, 다세대 주거 건물, 이동식 주택 단지 또는 노동캠프 내 영구 주거 시설에 개별 계량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명의 고객인 경우; 또는

b) 명의 고객의 우편 주소가 서비스 주소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지서는 “거주자” 앞으로 발송되며, 위 제6-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거주자에게 연체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수도국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거주자가 수도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제10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도국이 마스터 계량기를 통해 주거지에 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수도국은 서비스 중단 최소 10 영업일 전에 해당 계정이 연체 상태이며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서비스가 중단될 것임을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수도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통지를 제공합니다:

- a) 각 주거 단위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 b) 각 주거 단위의 출입문에 통지서를 게시;
- c) 각 단위에 개별 통지가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접근 가능한 각 공용 구역 및 건물의 각 출입 지점에 통지서 사본 2부를 게시; 또는
- d)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

통지서는 “거주자” 앞으로 발송되며, 위 제6-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거주자에게 연체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수도국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거주자가 수도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제10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 서면 통지 반송 불능

고객에게 발송된 서면 통지가 우편으로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은 경우, 수도국은 서비스 중단 최소 7 영업일 전에 명의 고객 또는 고객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수도국은 본 정책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연장 또는 기타 납부 약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면 통지가 우편으로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고 수도국이 전화로 고객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도국은 해당 주거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 및 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D. 전화 통지

수도국이 서면 통지 대신 전화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수도국은 본 정책의 서면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대체 납부 일정, 납부 유예, 최소 납부액, 미납 잔액의 분할상환 요청 절차 및 청구서 검토·이의신청 청구 절차를 포함하여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E. 서비스 주소에 대한 통지 게시

수도국은 서비스 주소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주거용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게시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해당 통지서는 서비스 중단 최소 48시간 전에 주거지에 게시됩니다. 본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본 정책 또는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통지, 고객 연락 또는 게시를 보완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연체 금액;
3. 추가 요금;
4. 총 납부 금액;

5.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
6.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 및
7. 고객이 납부 약정을 요청하거나 수도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F.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수도국은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1. 아래 제7-A항에 따라 고객 또는 거주지 내 성인의 이의신청, 분쟁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해 수도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기간;
2. 아래 제7-C항에 따른 이사회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
3. 해당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
4. 수도국이 아래 제8항에 따른 납부 약정 요청 또는 해당 재검토 기간을 검토 중인 기간; 또는
5. 고객의 납부가 아래 제8항에 따라 수도국이 승인한 연장, 분할상환, 대체 납부 일정 또는 감액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승인된 납부 약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 기간.

G.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특별한 의료·재정적 사유

1.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a)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088(b)(1)(A)에서 정의된 주치의로부터 수도 서비스 중단이 해당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

거주하는 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수도국에 제출하는 경우;

- b) 고객이 수도국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 고객은 정상적인 청구 주기 동안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고객 가구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General Assistance), Medi-Cal, 보충소득보장/주 보충지급 프로그램(SSI/SSP) 또는 캘리포니아주 여성·영유아 특별영양보충 프로그램(WIC)의 현재 수급자인 경우, 또는
- ii.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 c) 고객이 연체 요금에 대해 연장, 분할상환, 대체 납부 일정 또는 감액을 포함한 대체 납부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 2.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에게 수도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선택지를 제공하며, 이는 수도국이 재량으로 선택합니다:

- a) 납부 기간의 연장;
- b) 미납 잔액의 분할상환;
- c) 대체 납부 일정; 또는
- d)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감액 납부.

수도국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서류, 그리고 수도국의 납부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납부 약정을 선택합니다.

3. 고객은 제6-G-1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하면 수도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 수도국이 선택한 대체 납부 약정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약정에 참여하겠다는 고객의 서명 동의를 요청;
- b)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 또는
- c) 고객이 제6-G-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고객에게 통지.

제6-G항에 따른 제출이 계류 중인 동안 수도국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H. 서비스 중단 시점

수도국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수도국 사무실이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 시간에는 미납을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I. 서비스 복구

수도국은 고객에게 주거용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국은 다음 중 하나가 이루어진 후 수도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 1. 해당 이자 또는 위약금을 포함한 연체 금액의 납부;
- 2. 해당되는 경우 제9-A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수도국 행정규정 제7150조에서 정의된 재연결 수수료의 납부;
- 3. 수도국이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의 납부;
- 4. 제8항에 따라 승인된 납부 약정의 체결.

수도국이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착오로 또는 관련 법률이나 본 정책에 반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도국은 재연결 또는 복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7. 청구서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 절차

A. 이의 제기 또는 조사 요청 기한

고객 또는 거주지 내 성인은 이의가 있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제6-A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서에 명시된 중단일 이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7-A항의 목적상, 청구서는 우편 발송 후 5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이메일 발송 즉시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수도국의 검토

기한 내 접수된 이의 제기 또는 조사 요청은 수도국 관리자가 검토하며, 관리자는 고객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합니다. 검토 시 고객이 제8항에 따라 연장, 분할상환, 대체 납부 일정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수도국은 재량으로 기한이 지난 이의 제기 또는 조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의 제기 또는 요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 이사회에 대한 이의신청

본 제7항에 따라 기한 내 제기한 이의 제기 또는 조사 요청에 대해 수도국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은 고객 또는 거주지 내 성인은, 수도국이 결정을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구 총무(District Secretary)에게 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회에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구 총무는 해당 안건을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심리하도록 일정을 정하고, 회의 최소 10일 전에 고객에게 심리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8. 연장 및 기타 대체 납부 약정

본 제8항에서 설명하는 유예 또는 감액 납부 계획 및 대체 납부 일정은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청구서를 납부할 수 없는 모든 주거용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8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획은 제공된 수도 서비스에 대한 총 납부 금액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항에 따른 연장, 분할상환, 대체 납부 일정 또는 감액에 대한 자격은 고객이 제6-G항에 명시된 의료·재정적 어려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 연장 또는 기타 대체 납부 약정 요청 기한

고객이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청구서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본 제8항에서 설명하는 연장 또는 기타 대체 납부 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도국으로부터 서비스 중단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수도국 관리자가 검토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제출된 요청도 검토는 되지만, 본 항에서 설명하는 재검토 및 이의신청 권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본 제8-A항의 목적상, 서면 통지는 우편 발송 후 5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이메일 발송 즉시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제8항에 따른 요청이 거부된 고객은 10 영업일 이내에 총지배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재검토 요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B. 연장

수도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객의 미납 잔액 납부는 원래 납부 기한 이후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국 총지배인은 재량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연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고객은 수도국이 정한 기한까지 미납 잔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서비스 요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된 납부 기한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수도국은 개별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더 긴 상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 분할상환

수도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객의 미납 잔액 납부는 수도국 총지배인이 재량으로 정하는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상환될 수 있습니다. 수도국은 개별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더 긴 상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이 승인되면 미납 잔액은 분할상환 기간의 개월 수로 나뉘며, 해당 금액은 전액 납부될 때까지 고객의 월별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분할상환 기간 동안 고객은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서비스 요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상환 일정 및 납부 금액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D. 대체 납부 일정

수도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객은 수도국 총지배인이 재량으로 정하는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납부 일정에 따라 미납 잔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는 경우, 대체 납부 일정은 수도국이 정한 납부일과 일치하지 않는 정기적인 일시불 납부를 허용하거나, 수도국의 정기 납부일보다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납부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은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서비스 요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 납부 일정 및 납부 금액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수도국은 개별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더 긴 상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 납부 감액

수도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객은 수도 서비스에 대한 미납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은 다른 고객이 납부한 요금이 아닌 수도국의 무제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F. 약정 불이행

본 제8항에 따라 대체 납부 약정을 부여받은 고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60일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a) 연장된 납부 기한까지 미납 요금을 납부;
- b) 분할상환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분할상환 금액을 납부;
- c) 대체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
- d) 납부 기한까지 감액된 납부 금액을 납부; 또는
- e) 현재 발생하는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

수도국은 서비스 중단 최소 5 영업일 전에 서비스 주소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서비스 연결 해지 의사에 관한 최종 통지서를 게시합니다. 이 최종 통지서는 이미 제7항에 따라 검토된 청구서에 대하여 해당 항에 따른 이의 제기, 조사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9. 저소득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A. 재연결 수수료 한도 및 이자 면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미만임을 수도국에 입증하는 주거용 고객에 대해 수도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정상 업무 시간 중 재연결 수수료는 50달러(\$50)로, 업무 외 시간 중에는 150달러(\$150)로 제한하되, 수도국의 실제 재연결 비용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미국 노동통계국의 전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 수도국은 현재 연체 청구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자가 부과될 경우, 수도국은 자격을 갖춘 고객에 대해 12개월에 한

번씩 이를 면제합니다. 수도국은 고객의 요청 시점에 미납 상태인 이자에 대해 면제를 적용합니다.

B. 자격 요건

다음의 경우, 수도국은 주거용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소득보장/주 보충지급 프로그램(SSI/SSP) 또는 캘리포니아주 여성·영유아 특별영양보충 프로그램(WIC)의 현재 수급자인 경우, 또는
2.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10.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수도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절차

A. 적용 대상

본 제10항은 주거용 서비스 주소의 소유자, 임대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명의의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고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의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 수도국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각 거주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수도국 행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국은 실제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하나 이상의 거주자가 수도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후 계정 요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수도국 행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수도국에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수도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임차 사실의 확인

연체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객이 될 자격을 갖추려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연체 계정의 명의 고객이 해당 주택의 임대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임대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자료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서류, 또는 민법(Civil Code) 제1962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국의 재량에 따릅니다.

D. 신용 확립 방법

수도국과의 신용 확립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거주 사실과 임대료 또는 수도국이 인정하는 그 밖의 신용 채무에 대한 신속한 납부 증빙이 이를 대체하는 충분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E. 임대료 납부액에서의 공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371(d)조에 따라, 본 제10항에 따라 수도국의 고객이 된 거주자로서 임대료 등 정기 납부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매 납부 기간마다 직전 납부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에 대해 수도국에 납부한 합리적인 요금 전액을 정기 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본 정책 및 특정 서면 통지의 언어

본 정책은 수도국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 사본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수도국 서비스 지역 내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그 밖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수도 공급 중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면 통지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수도국 서비스 지역 내 고객의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그 밖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12. 기타 구제 수단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 중단 외에도, 수도 서비스 요금 미납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그 밖의 구제 수단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lien) 설정을 통한 연체 금액 확보, 청구 또는 법적 조치의 제기, 또는 미납 금액의 추심 의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가 수도국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경우, 수도국은 변호사 비용 및 누적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13. 기타 고객 위반 사항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수도국은 미납 이외의 사유로 수도국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납 이외의 사유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은 관련 법률 및 수도국 조례, 규칙, 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4. 발생한 수수료 및 요금

본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체 요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국의 다른 규칙,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요금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15. 연간 단수 보고

수도국은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 건수를 매년 수도국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전자연례보고서(Electronic Annual Repor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적절히 보고합니다. 수도국은 또한 동일한 정보를 수도국 이사회에도 보고합니다.

16. 수도국 직원의 결정

본 정책에 따라 수도국 총지배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총지배인이 지정한 자가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R 20-1-1 01/21/2020; 08/27/26;